

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
제1차 교육위원회
2023. 2. 1.(수)

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
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교육위원회
(수석전문위원 장중찬)

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
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윤종호 의원 외 9명

2. 개정이유

- 학교 학부모회 임원의 연임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학부모회 회장의 임기 규정에 추가 연임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함(안 제8조)
- 나. 개정규정에 대하여 적용례를 신설함(부칙 제2조)

4. 검토의견

가. 개정취지

-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학부모회 구성에 신규 입회 희망자가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대안 마련을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

- 학교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모집대상 및 역할 등의 중복이라는 문제점이 있으며, 상대적으로 권한이 더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선호 경향에 따라 학부모회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낮은 상황임
- 또한, 학부모회 회장은 기존 조례에서 한차례만 연임을 허용하고 있어 신규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학부모회 회장을 공석으로 유지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초과 연임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기능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됨
- 조례안은 위 배경의 필요성을 토대로 학교 학부모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안 제8조 학부모회 회장의 연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추가 연임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학부모회의 역할,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증대해 경북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함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8조는 학교 학부모회 회장의 연임규정에 대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새로운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얻어 1회 추가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함.
-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로서 제8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대하여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한 차례 학부모회 회장을 연임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신설함.

다. 종합의견

-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대상 중복, 역할 중복 및 권한차이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

어 신규 회원 및 임원 구성에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. 더욱이, 학령인구 감소 및 맞벌이 가정증가 등 사회적 배경도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로 분석되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됨

- 본 조례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의기구로서 학교 학부모회의 안정적 구성,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제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

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